

1. 개정이유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운영과 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개정('24.12.3.)으로 법률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목진료정보체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안 제12조의15)

- 나무의사 등의 자격·경력, 보수교육 현황, 나무병원 등록현황, 수목진료 실적 외 그 밖에 수목진료 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요청자료를 명시(안 제12조의16)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명시

다. 수목진료정보체계, 경력증명서 신청·발급 업무의 위탁(안 제34조)

-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4월 ~ 5월)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15 및 제12조의1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15(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 ① 법 제21조의1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1조의3 및 이 영 제12조의4에 따른 수목진료 실태조사에 관한 정보
2. 법 제21조의7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정보
3. 법 제21조의12에 따른 처방전 발급 및 농약사용에 관한 현황 및 통계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수목진료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15제1항에 따라 구축한 수목진료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수목진료정보체계”라 한다)로 관리하는 정보와 자료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수목진료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공하는 정보와 자료 등의 종류·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의16(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 법 제21조의15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나무의사 등의 학력·경력·자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수목진료에 대한 입찰정보, 계약체결 현황, 대가의 지급현황 등 계약정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나무병원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조정식재·시설물공사업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허가 등을 받은 자료 또는 정보
4. 그 밖에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제34조제5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1조의15에 따른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운영
4. 법 제21조의16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근무처·경력·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 신고사항의 접수 및 나무의사 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

별표 4 제2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법 제21조의15제3항 및 제21조의16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1호의6	50	70	100
---	----------------	----	----	-----

별표 4 제2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법 제21조의16제4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1호의7	50	70	100
--	----------------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	300	500
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57조제5항제1호	10	10	10
다. 법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 사업장이나 가정 등에서 배출된 다량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2) 그 밖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1호	50 10	70 15	100 20
라. 법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7조제5항제2호	10	10	10
마. 나무의사가 법 제21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부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1호의2	50	70	100
바. 나무의사가 법 제21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수목을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등을 발급한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1호의3	50	70	100
사. 나무의사가 법 제21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처방전등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1호의4	50	70	100
아. 나무병원이 법 제21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의 처방전 없이 농약을 사용하거나 처방전과 다르게 농	법 제57조제1항제2호	150	300	500

약을 사용한 경우				
자. 나무의사가 법 제21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7조제3 항제1호의5	50	70	100
차. 법 제21조의15제3항 및 제21조의16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 경우	법 제57조제3 항제1호의6	50	70	100
카. 법 제21조의16제4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	법 제57조제3 항제1호의7	50	70	100
타.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 항제2호	30	40	50
파.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 항제2호	10	20	30
하.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4 항제1호	10	20	20
거. 법 제3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경우	법 제57조제3 항제3호	10	20	30
너.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제4 항제2호	10	20	20
더.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4 항제3호	10	20	20
러. 법 제45조의8제10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57조제2 항	50	100	200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2조의15(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 ① 법 제21조의1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u> <u>1. 법 제21조의3 및 이 영 제12조의4에 따른 수목진료 실태조사에 관한 정보</u> <u>2. 법 제21조의7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정보</u> <u>3. 법 제21조의12에 따른 처방전 발급 및 농약사용에 관한 현황 및 통계</u> <u>4. 그 밖에 산림청장이 수목진료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u> <u>②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15제1항에 따라 구축한 수목진료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수목진료정보체계”라 한다)로 관리하는 정보와 자료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수목진료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u>

<신 설>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공하는 정보와 자료 등의 종류·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의16(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

법 제21조의15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나무의사 등의 학력·경력·자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수목진료에 대한 입찰정보, 계약체결 현황, 대가의 지급현황 등 계약정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나무병원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허가 등을 받은 자료 또는 정보
4. 그 밖에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 ④ (생 략)

⑤ 산림청장이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 략)

<신 설>

<신 설>

⑥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2. (현행과 같음)

3. 법 제21조의15에 따른 수목진
료정보체계의 구축·운영

4. 법 제21조의16에 따른 나무의
사 등의 근무처·경력·자격 등
(이하 “경력등”이라 한다) 신고
사항의 접수 및 나무의사 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

⑥ (현행과 같음)